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3-5-20)

최종개정일 : 2016.11.10.

제1장 총 칙

제1조 (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대학교내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대학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제2조 (제정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3조 (직제편성) 학군단에 대한 직제편성은 대학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대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 교관, 행정실장, 획득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4조 각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대학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개정 2016.11.10.)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학군단의 고유임무와 대학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10.)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개정 2016.11.10.)

제5조 (군사교육요원)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개정 2016.11.10.)

- ①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동안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대학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체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대학 총장 책임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 ③ 대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행정실장은 육군참모총장이 추천

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 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대학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11.10.)

④ 예비역교관 및 학군단 행정실장의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0.)

1.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은 학군단에 소속되어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과 훈육 및 학군단장이 부여한 기타 임무를 수행하며, 대학교 교직원에 준하여 대우한다.(개정 2016.11.10.)
 - 가. 학군단장이 지정하는 군사학 과목 교육
 - 나. 후보생 훈육지도 및 관리
 - 다. 학군사관후보생/대학 군장학생 모집 및 선발 관련 행정업무
 - 라. 동·하계 입영훈련 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파견되어, 군사학 교육에 관련된 업무
 - 마. 대학과 학군단이 연계된 업무협조 및 행사 관련 업무
 - 바. 기타 총장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업무수행
2.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은 입영훈련간 육군학생군사학교의 파견명령에 의해 파견되어,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지휘통제하에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파견기간 동안 그 여비 및 파견비는 대학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11.10.)
3.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1회(11월 정기평가) 학군단장이 실시하고, 동·하계입영훈련 파견간 평가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 평가하여 대학교에 통보하며, 평가결과는 연봉,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참고한다. 또한 재계약 3개월 이전 학군단장이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에 대한 재임용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다.(개정 2016.11.10.)
4. 학군단장은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다음 각 목과 같은 결격사유 발생 시 총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11.10.)
 - 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우(교내교육, 입영훈련 등)
 - 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 다. 교관 및 훈육요원으로서 교수능력 및 자질이 부족할 경우
 - 라.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예비역교관 및 행정실장의 해임사유 발생 시 육군참모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석인원에 대한 채용은 5조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6. 예비역교관 및 행정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며, 동시에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제출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총장에게 후임자를 선발·추천한다.(개정 2016.11.10.)
7. 그 밖의 인사관리는 대학 교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신설 2016.11.10.)

제3장 학군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

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과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학 교관이 담당하게 한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전시 국방부계획에 의해 전환 시 학군 사관 후보생의 군사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학 교관(2명), 학군단 행정관(1명)을 채용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내에서 대학총장 책임 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개정 2016.11.10.)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개정 2016.11.10.)

1. ~ 3. 삭제 (2016.11.10.)

③ 삭제 (2016.11.10.)

④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선택과목 또는 자율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수강신청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0.)

⑤ 교내교육 세부 지침은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하달되는 학교교육계획을, 평가는 육군학생 군사학교 평가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16.11.10.)

⑥ 학군 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및 휴학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미이수 군사학 군사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16.11.10.)

제8조(입영교육) ① 입영교육은 학군 사관후보생을 군부대에 위탁하여 교내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도록 한다.

② 대학교는 학군 사관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한다.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9조(홍보업무지원) 대학은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개정 2016.11.10.)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은 우수한 자원이 학군 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부여한다.(개정 2016.11.10.)

1. 후보생 장학금 지급
2.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3. 학군사관후보생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대학은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0.)

1. 교보재 창고(개정 2016.11.10.)
2. 군사교육요원이나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병생활관(개정 2016.11.10.)
3.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 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개정 2016.11.10.)
5. 학군 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일반학생과 공용으로 순환 사용 가능) 및 샤워실 (개정 2016.11.10.)
6. 삭제 (2016.11.10.)
7.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개정 2016.11.10.)

제12조 삭제 (2016.11.10.)

제13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개정 2016.11.10.)

1. 학군사관 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해외·국내 군사문화탐방, 복지비, 자치활동비 등) (개정 2016.11.10.)
2.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개정 2016.11.10.)
3.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관련 예산 (신설 2016.11.10.)
4. 예산편성은 연 1회 대학 재무회계관리규정 제 2장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익년도 사업별 예산을 산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신청서를 예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대학예산 사용은 대학 예산 사용지침 및 규정에 의해 사용한다.

제14조(예비역 교관에 대한 연구수당 등) 예비역 교관의 교육준비와 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10.)

1. 교관의 교재연구 및 훈육지도 수당
2. 입영훈련 파견과 학군단 관련업무 출장경비 지원

제 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본부 처장급으로 구성하며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1.10.)

② 위원장은 대학 부총장이 된다.(개정 2016.11.10.)

③ 위원은 학교본부 처장급과 학군단장으로 하고, 필요 시 장교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6.11.10.)

제16조(심의사항 및 시기) 학군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1.10.)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국방부에서 추천한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개정 2016.11.10.)
3.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4. 학군단 운영 및 학군 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재·개정
5.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발생 시 심의

제 7장 학군 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10.)

제18조(보상)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 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9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3의 ①에 의거,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대학총장 또는 입영부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3의 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 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개정 2016.11.10.)

제21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대학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내 학생상해보험제도에 준하여 보상한다. 단,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개정 2016.11.10.)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